

정년보장교원임용세칙

(제정 1998. 9. 1.)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「교원인사규정」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2.27.>

제2조(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)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1.12.28.>

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1.12.28., 2012.5.18., 2014.1.1.>

④ 선교봉사처장, 학생취업처장, 입학처장,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개정 2016.12.27.]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6.12.27.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심사기준)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심사기준은 「교원인사규정」 제14조,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6.12.27.>

제5조(심사) ① 심사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이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 평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[본조개정 2016.12.27.]

제6조(회의 소집 등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6.12.27.>

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교무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7조(교원의 정수)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「교원인사규정」에 따른다. <개정 2016.12.27.>

제8조 삭제 <2016.12.27.>

제9조 삭제 <2016.12.27.>

부 칙

이 세칙은 199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